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3. 7. 13. (목), 13: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차기신청대상 선정

2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보고사항】

3 「한양의 수도성곽」 예비평가 요청서 보고

심 의 사 항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차기신청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유네스코에 제출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모범사례, 대표목록, 긴급보호)는 다등재국의 경우 2년 1건으로 심사 제한 중
 - 우리나라는 현재 22종목 등재로 다등재국으로 분류, 심사 제한 대상임
- 2024년도 등재예정인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이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대상의 등재신청서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61호) 제6조에 따라, 대상은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함
- 이에 2023. 3. 27.~5. 8.(43일 간)에 걸쳐 등재신청대상 공모를 실시, 접수된 14건에 대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차기 등재신청종목을 선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심의대상)

연번	제목	종목	분야
1	농요	예천통명농요(국가 제84-2호), 고성농요(국가 제84-1호), 남도들노래(국가 제51호), 마들농요(서울시 제22호), 수영농정놀이(부산시 제2호), 구미 밭쟁이 들소리(경북 제27호), 들말 두레소리(대전시 제13호), 안동 저전농요(경북 제2호), 상주민요(경북 제13호), 모전농요(경북 제46호), 김포 통진 두레놀이(경기도 제23호), 결성농요보존회(충남 제20호), 예천공 처농요(경북 제10호), 진천 용몽농요(충북 제11호), 영동 설계리농요(충북 제6호), 평택 민요(경기 제48호), 평북농요(평북 제4호),	전통공연·예술

		고양들소리(고양시향토 제57호)	
2	자리걸이	자리걸이(경기 제61호)	의례·의식
3	경기도당굿시나위춤	경기도당굿시나위춤(경기 제64호)	전통공연·예술
4	송서올창	송서올창(경기 제54호)	구전전통
5	풀피리	풀피리(경기 제38호)	전통공연·예술
6	인삼문화: 자연과 가족(공동체)를 배려하고 감사하는 문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국가 제143호) *공동체종목	전통지식
7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	한지장(국가 제117호), 지장(전북 제35호), 한지장(경남 제46호), 한지장(경북 제23-2호) 지장(경기 제16호), 한지장(강원 제32호), 한지장(전북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전통기술
8	가야금산조및병창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 제23호)	전통공연·예술
9	사기장(백자)	사기장-백자(경북 제32-4호)	전통기술
10	진도지역의 3개 상장례의식	진도셋김굿(국가 제72호), 진도다시래기(국가 제81호), 진도만가(전남 제19호)	의례·의식
11	염색장	염색장(국가 제115호)	전통기술
12	막걸리빚기	막걸리 빚기(국가 제144호) *공동체종목	전통생활관습
13	서울새남굿	서울새남굿(국가 제104호)	의례·의식
14	장철영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나전장(국가 제10호)	전통기술

라. 추진 경과

- 등재신청대상 공모 실시 2023. 3. 27. - 5. 8.
 - 기 간: 2023. 3. 27.(월) - 5. 8.(월) / 43일간
 - 대 상: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 *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와의 공동 신청 경우 우선 고려
 - 접수결과: 14건 접수

마. 참고사항(향후 일정)

-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선정 이후~'24년 1월: 신청서 국문본 수정 및 검토
 - '24년 2월~3월: 영문 번역, 영문본 검토 수정, 동영상 제작
 - '24년 3월 31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 제출
 - '25년 11월~12월: '26년도 심사 및 등재결정 대상으로 선정
 - '26년 3월~9월: 등재신청서 심사
 - '26년 10월: 등재신청서 심사결과 공개
 - '26년 11월~12월: 등재결정
- 등재신청서 수정 작성 및 검토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관련

아. 의결사항

○

- ※ <첨부1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 <첨부2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심사절차
- ※ <첨부3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개요 및 현황

첨부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및 <협약 운영지침> 상 등재기준

✓ 대표목록 등재 기준

기준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에 나오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충족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

기준 2) 해당 유산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대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해야 함

기준 3)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Safeguarding measures)가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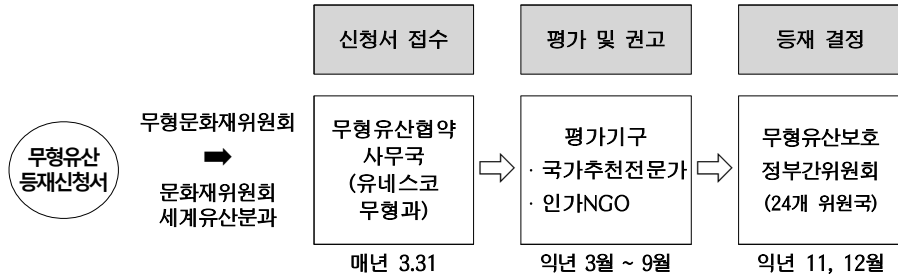
기준 4) 등재신청 시 관련 공동체, 집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의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기준 5) 해당 유산은 등재 신청 당사국의 무형유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첨부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 인류무형유산 신청 및 국외 심사절차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는 각 국가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와 평가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협약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을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로 등재함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국으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형유산관련 신청서 심의, 무형유산기금 운영, 무형유산협약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의결 (매년 11~12월경 개최)

** 평가기구: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목록등재, 국제원조)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국가추천전문가, 6개의 인가NGO 대표자로 구성됨. 임기는 4년이며 매년 3석 개선(改選)

※ 원칙적으로 신청서는 매년 제출 가능하나 유네스코 사무국의 인력, 예산 부족으로 다등재국은 2년 1회로 심사 제한 실시 중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22건/ 중국 36건, 일본 22건) 다등재국으로, 심사제한 중

첨부 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개요 및 현황

(2023. 7. 4. 기준)

구분	인류무형유산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 2005년 우리나라 가입 ○ 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주기 : 매년(다등재국은 제한) ○ 신청서류 제출 : 매년 3.31까지
절차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선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
등재현황	<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 (제출익년 3월~9월) ○ 최종심의·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등재유산 (22건)	22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01.5.18) 판소리 ('03.11.7) 강릉단오제 ('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09.9.30) 가곡, 대목장, 매사냥 ('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11.11.29) 아리랑 ('12.12.5) 김장문화 ('13.12.5) 농악 ('14.11.27) 줄다리기 ('15.12.2) 제주해녀문화 ('16.11.30) 씨름 ('18.11.26/ 남북공동등재) 연등회('20.12.16), 한국의 탈춤('22.11.30)
	잠정목록
잠정목록	잠정목록 제도 없음
북한 (4건)	4건
북한 (4건)	북한의 아리랑 ('14.11.27), 김치 만들기 ('15.12.2), 씨름 ('18.11.26/ 남북공동등재) 평양냉면 풍습('22.11.30.)
세계	677건(140개국) / 협약가입국 181개국 중국 36건, 튀르키예 23건, 프랑스 22건, 일본 22건, 스페인 19건, 크로아티아·이란 18건 등 ※공동등재 74건 101개국

2.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신청 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신청명 <반구천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3년 제4차 회의(2023.4.13.)에서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제13조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 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간의 추진경과

○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 2022.5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2022.12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2023.4월 : 등재신청후보 선정 심의 “가결”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구성요소,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3.15.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설명, 비교연구, 보호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4.6.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호관리 요건 등 서술보완 필요)

보 고 사 항

3. 「한양의 수도성곽」 예비평가 요청서 보고

가. 보고사항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예비평가 요청서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예비평가 절차 이행을 위해 예비평가 요청서를 제출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이행 지침에 새롭게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제도에 따라 본 위원회 2023년 제3차 회의(2023.4.13.)에서 예비평가 조건으로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된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 요청서를 보고하는 사안임

▶ **예비평가** :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 간의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 준비 및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유네스코에 도입한 제도

다. 그간의 추진경과

○ 한양도성 등재 추진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7.3월 : 이코모스 등재불가 권고→등재신청 철회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 등재기준 (iii), (iv) 유산관리 전통, 건축유형 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유산구역 확대(이코모스 패널 권고사항)했으나, 여전히 완전성 부족

- 2019.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북한산성 등재 추진경과

- 2018.4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부결’(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 필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서울시·경기도 등재 추진경과

- 2022.7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2.1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선정’(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1월 : 잠정목록 조정
 - 잠정목록 명칭 조정 : 한양도성 →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 잠정목록 구성요소 조정 : 한양도성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4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재신청 후보 조건부 가결
 - ※조건 : 세계유산 등재 국의 심사절차 제도에서 신규 도입되는 ‘**예비평가 이행**’ 권고
- 2023.5월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잠정목록 조정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유산의 가치, 등재기준 서술, 유산의 속성 등 보완 필요)
- 2023.3.9.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등재기준, 비교연구 등 보완 필요)
- 2023.3.30.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